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 08. 12.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2. 08. 16.
- 상정일자 :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2022. 08. 25.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광식 재무과장, 이재훈 수도사업소장,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나.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른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을 의결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880,574	889,103	720,974	168,128
일반회계	802,524	805,817	658,172	147,645
특별회계	78,050	83,286	62,802	20,483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880,574	893,013	889,103	94	3,814	100.9	99.4
일반회계	802,524	809,035	805,818	94	3,122	100.4	99.6
특별회계	78,050	83,978	83,285	0	692	106.7	99.2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783,541	97,033	880,574	720,974	113,589	6,537	39,473
일반회계	709,517	93,007	802,524	658,172	103,248	6,492	34,611
특별회계	74,024	4,026	78,050	62,802	10,341	45	4,862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전 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7건	2,543	245	245	

이 체(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942건	120,931	120,931	

심 사 의 견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그쳐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을 통하여 증·감 조정후 집행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17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이 체(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사업 업무 이관, 조직 신설 등으로 업무이관 추진된 사항으로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계속비 결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34,060	12,210	21,397	453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4,694	1,697	2,997	0
문화관광자원개발-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전환사업)	7,128	1,413	5,715	0
지자체자연휴양림-거창항노화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824	1,824		0
거창자생식물원 조성사업(전환)	194	174		20
빼재익스티림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전환)	2,067	1,021	1,046	0
백두대간거점자연휴양림조성사업	200	34	166	0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용수개발)(전환)	647	188	403	56
웅곡천생태하천복원사업(전환)	2,399	23	2,000	376
신활력플러스사업	3,296	269	3,027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9,602	4,101	5,501	0
취약지역개조(궁항지구)	113	112		1
기초생활거점육성(북상면)	1,896	1,354	542	0

심사의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2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음.

6)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11,105	9,808	160	1,136
행 정 과	백 신 접 종 지 원 사 업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지원	128	11		118
행 정 과	백 신 접 종 지 원 사 업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지원	7	4		3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활동 활 성 화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	30	20		9
문화관광과	관 광 활 성 화	관광사업체 재난지원 금 지원사업	29	14		15
문화관광과	관 광 활 성 화	경남 행사, 축제, 공연 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6	6		
복지정책과	주민 생활지원	거창형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32	28		4
복지정책과	주민 생활지원	거창형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12	12		0
복지정책과	주민 생활지원	거창형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15	5		10
복지정책과	주민 생활지원	거창형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6,150	5,988		163
복지정책과	재 해 구 호	재해구호	56	56		
복지정책과	한시생계지원사 업(제4차 정부형 재 난 지 원 금)	한시생계지원사업(제4 차 정부형재난지원금)	30	19		10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복지정책과	한시생계지원사업(제4차 정부형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제4차 정부형재난지원금)	10	5		5
복지정책과	한시생계지원사업(제4차 정부형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제4차 정부형재난지원금)	5	1		5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 상 공 인 긴 급 재 난 지 원 금	4,025	3,272		754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 충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 정 지 원 사 업	27	26		1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 충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 자 거창형 재난지원금	77	73		3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 충	전세버스기사 긴급고용 안 정 지 원 사 업	26	25		1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 충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 금 지 원 사 업	8	6		2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 충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 자 금 지 원 사 업	16	15		
농업축산과	가 축 방 역	살 처 분	415	221	160	33
보건정책과	공공의약관리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 매 업 소 지 원	1	1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행정과의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사업’ 등 21건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무분별하거나 과도하게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사항임
- 긴급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중 이월액이 있는 예비비의 이월사유 설명이 필요함

7)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301	413,172	113,589	
명 시 이 월	106	176,359	45,423	
일반회계	96	157,670	37,647	
특별회계	10	18,689	7,776	
사 고 이 월	173	202,151	45,228	
일반회계	167	189,293	44,203	
특별회계	6	12,858	1,025	
계속비 이월	22	34,662	22,938	
일반회계	18	30,253	21,398	
특별회계	4	4,409	1,540	

심 사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사업대장지 선정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나)=(다)-㉠	조 성 액(다)	사 용 액(라)	
계(8종)	167,948	△18,157	44,635	62,792	149,7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2,278	△16,693	43,307	60,000	135,586
중소기업육성기금	6,455	△280	90	369	6,176
식품진흥기금	144	△9	59	68	135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9	△4	4	8	505
사회복지기금	3,604	△1,060	69	1,129	2,544
재난관리기금	3,523	△148	1,020	1,169	3,374
옥외광고발전기금	340	28	71	44	368
체육진흥기금	1,095	9	15	5	1,103

심 사 의 견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으로
-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그 사용목적이 당초 기금을 조성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9) 채권액 결산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5,886	1,072	2,651	4,307
일반회계	3,573	86	570	3,089
특별회계	2,302	976	2,070	1,208
농업발전기금	2,302	976	2,070	1,208
기 금	11	10	11	10
사회복지기금	11	10	11	10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심 사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5,886백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1,072백만원이 발생하고, 2,651백만원 소멸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307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11백만원, 보증금채권 143백만원, 융자금 채권 2,907백만원임
-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권과 사무실 임대이며,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등이 있음.

10) 채권액 결산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11) 보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63,413 (126,362)	361,454 (126,851)	301,595 (99,839)	47,783 (21,118)	12,432 (5,899)	
일 반 회 계	356,547 (125,271)	354,598 (125,760)	295,131 (99,004)	47,682 (21,118)	12,132 (5,644)	
특별 회계	발전소	30	30	30	(0)	(0)
	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229 (0)	229 (0)	212 (0)	(0)	17 (0)
	산업단지조성사업	1,143 (1,089)	1,143 (1,089)	888 (835)	(0)	254 (2532)
	수질개선	5,464 (2)	5,464 (2)	5,334 (0)	101 (0)	29 (2)

※ ()내는 군비 부담액임.

심 사 의 견

- 2021년도 보조금 예산액 363,413백만원이며, 수령액은 361,454백원이며, 집행액은 301,595만원으로 47,783만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126,851백만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35%에 해당됨.

전 체 심 사 의 견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결산은 사후적인 절차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으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책임을 해제하는 기능임.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2021년도 총 세입액은 889,103백만원, 총 세출액은 720,974백만원으로 168,129백만원(세입액의 18.9%)이 집행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았음.

- 지난해 잉여금(178,351백만원, 세입액의 22.3%) 보다는 양호하나 여전히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총 세입은 889,1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797,976백만원) 91,12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77,676백만원(34.5%)이고, 보조금 228,838만원(28.4%), 조정교부금 29,944백만원(3.7%), 지방세는 34,770백만원(4.3%), 내부거래가 214,562백만원이며,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6.8%, 이전수입은 66.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6.6%임.
- 총세출은 720,974백만원으로 전년(619,625백만원) 대비 101,34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분야별 예산규모는 △농림해양수산 145,375백만원 △사회복지 136,947백만원 △환경 96,623백만원 △일반공공행정 85,37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3,463백만원 순이며, 지난해 대비 전 분야의 세출이 증가했음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8종류임.
- 2020년도말 조성액은 167,94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4,635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2,792백만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49,79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20년 대비 42,12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00백만원의 일반회계 전출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은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2020년 대비 11,463백만원이 감소했으며, 불용액의 경우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64,611백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 철저
- 보조금 반납은 2020년(5,267백만원) 대비 1,270백만원이 증가한 6,537백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포기 등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이 2020년과 동일한 481백만원으로, 코로나19 등 징수여건이 악화됐더라도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나아가 불납결손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엄격하고 적법한 결손처분절차를 준수하여 관리가 필요함
- 예산 집행 후 미집행 사업은 24건에 379백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삭감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함에도 절차 미이행

- 지난해 보조금 반환금이 60억 9천 9백만원으로 이는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분별한 공모로 인해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III **질의 및 답변 : 생략**

IV **토론요지 : 해당없음**

V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22 - 7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08. 1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08. 16.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08. 26. 상정·의결)

2. 세입예산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구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93,152,535	693,801,550	99,350,985	14.32
지방세수입	39,193,431	39,193,431	0	0.00
세외수입	13,686,605	13,656,827	29,778	0.22
경상적세외수입	7,229,102	7,229,10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919,098	5,889,320	29,778	0.5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38,405	538,405	0	0.00
지방교부세	376,416,559	302,010,000	74,406,559	24.64
조정교부금등	40,438,713	28,730,734	11,707,979	40.75
보조금	228,144,945	213,990,428	14,154,517	6.6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272,282	96,220,130	△947,848	△0.99

3. 세출예산안 대비표

(1)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계	845,473,262	742,986,258	106,047,209	13.79
일반회계	775,001,099	676,074,300	98,926,799	14.63
특별회계	70,472,163	66,911,958	3,560,205	5.32
공기업	52,320,727	49,184,708	3,136,019	6.38
기타	18,151,436	17,727,250	424,186	2.39

(2)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합 계	775,001,099	676,074,300	98,926,799	14.63
의회운영위원회	1,069,656	1,055,544	14,112	1.34
총무위원회	388,693,173	335,409,686	53,283,487	15.89
산업건설위원회	385,238,270	339,609,070	45,629,200	13.44

(3)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

(단위 : 천원)

구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0,472,163	66,911,958	3,560,205	5.32
총무위원회	6,188,789	5,966,395	222,394	3.73
산업건설위원회	64,283,374	60,945,563	3,337,811	5.48

4. 심사결과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9건에 대해 1,465,670천원 삭감하며, 1건에 대해 65,000천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5. 변동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감액)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계					9건	1,530,670	1,465,670	65,000		
1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활성화	문화예술활동지원	연말연시 빛의거리 조성	100,000	▲100,000	0	불요불급	p167
2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도시육성	문화도시조성	문화도시조성추진	연극(예술인)레지던시 공간조성(리모델링)	160,000	▲160,000	0	불요불급	p170
3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도시육성	문화도시조성	문화도시조성추진	연극(예술인)레지던시 기자재구입	40,000	▲40,000	0	불요불급	p170
4	산림과	산림자원조성	임산물소득지원	산림소득증대지원	고로쇠수액가공시설설치	150,000	▲150,000	0	불요불급	p285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5	산림과	산림자원 구성	임산물 소득 지원	산림소득 증대지원	화목보일러 자동확산 소화기구입설치	70,000	▲35,000	35,000	불요불급	p285
6	산림과	산림자원 구성	임산물 소득 지원	산림소득 증대지원	가북용산숲 정비	800,000	▲800,000	0	불요불급	p285
7	환경과	자연 환경	자연 환경	생태환경	야생동물피해예 방시설설치사업	64,270	▲64,270	0	불요불급	p297
8	농업 축산과	농촌복 지증진	농촌복 지인프라 구축	거창군농업 회의소 농정UP 상생프로 젝트	농정회의소 농정UP 상생프로젝트 사업	66,400	▲66,400	0	불요불급	p337
9	행복 농촌과	로컬 푸드 활성화	로컬 푸드 기반조 성	로컬푸드 기반조성	로컬푸드 기반조성	80,000	▲50,000	30,000	불요불급	p365

－ 일반회계(증액)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1	문화 관광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 술행사 활성화	문화예술 행사지원 (보조)	크리스마스문화 행사	△45,000	65,000	20,000	불요불급	p167

－ 특별회계 : 해당 없음

6. 조건부 승인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승인액	조건부승인내역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2건	222,275	222,275		
문화 관광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7-01(연구용역비) ○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000	200,000	연극·예술인을 포함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결과 의회 보고 후 집행	p167
경제 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택시보호격 벽설치지원 사업	307-02(민간경상사 업보조) ○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	22,275	22,275	사업 대상자 수요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의회 보고 후 집행	p272

- 특별회계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22 - 74호>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08. 1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2. 08. 16.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08. 26. 상정·의결)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4. 기금운용 계획

▣ 변경(안)

단위:천원

기금명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㉑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㉒ (^㉓ + ^㉑)	비고
			수입 ^㉓	지출 ^㉔	증감 ^㉕ (^㉓ - ^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당초	135,862,477	872,060	40,000,000	△39,127,940	96,734,537	
	변경	135,585,615	30,872,060	40,000,000	△9,127,940	126,457,675	
	증감	△276,862	30,000,000	0	30,000,000	29,723,138	
아름예술제 진흥기금	당초	500,569	5,256	4,000	1,256	501,825	
	변경	504,569	5,256	8,000	1,256	501,825	
	증감	4,000	0	4,000	0	0	

▣ 변경내용

○ 수 입

단위:천원

기금명	구분	수 입 변 경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당초	136,734,537	0	135,862,477	872,060
	변경	166,457,675	30,000,000	135,585,615	872,060
	증감	29,723,138	30,000,000	△276,862	0
아름예술제 진흥기금	당초	505,825	0	500,569	5,256
	변경	509,825	0	504,569	5,256
	증감	4,000	0	4,000	0

○ 지 출

단위:천원

기금명	구분	지 출 변 경 계 획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당초	136,734,537	0	96,734,537	40,000,000
	변경	166,457,675	0	126,457,675	40,000,000
	증감	29,723,138	0	29,723,138	0
아름예술제 진흥기금	당초	505,825	4,000	501,825	0
	변경	509,825	8,000	501,825	0
	증감	4,000	4,000	0	0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